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210
----------	-----

2023. 7. 14.
도시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7. 5. / 조성대 의원 등 10명
- 나. 회부일자 : 2023. 7. 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7. 14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시 상주하며 회계업무, 장비 관리,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간사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을 보호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투명한 회계 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상주하며 업무에 임하는 간사의 최저임금을 보호하고자 근무수당 지원 규정 신설. (안 제11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윤선기)

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동 지역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, 마을 환경정비, 겨울철 제설작업, 해충 방역 및 수해 대비 활동 등 재난 예방 및 복구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회계, 장비 관리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할 최소 인원에 대한 근무수당을 보장코자 하는 사항으로, 현재 경기

도 내 9개 시·군에서 기 근무수당을 보장하고 있는 등,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붙임 :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1부.